

광주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나603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애포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광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창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익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8.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가단19802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유한회사 C, 유한회사 G 등 7개 회사(이하 '7개 회사'는 위 7개 회사를 가리킨다)는 2017. 9. 28.경 피고와 사이에 전남 함평군 H 일대에 피고가 설치할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내용의 각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①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D가 2017. 8. 29. 원고의 대표이사 E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E가 태양광발전소 부지 매입 업무 등을 담당하던 F에게 이를 송금하였고(이하 '2017. 8. 29.자 1억 원'이라 한다), ② E가 2017. 12. 26.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이하 '2017. 12. 26.자 1억 원'이라 한다), ③ 원고가 2018. 3. 13.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2018. 3. 13.자 2억 2,000만 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종료일인 2019. 6. 30.까지 공사이행을 하지 못하자, 2019. 6. 30.자로 7개 회사로부터 계약금 5억 3,000만 원(그중 원고와 유한회사 C의 계약금은 각 1억 원이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되 추후 위 돈을 반환(피고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한전선로가 확보되었을 때에는 확약서 자동폐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7개 회사를 대표한 유한회사 G에 교부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를 포함한 7개 회사는 2020. 3. 26. 최종적으로 '7개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으로 총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태양광공사계약을 해제하고, 7개 회사는 계약금의 14%를 포기하며, 피고는 7개 회사에 받은 계약금의 86%를 반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위 1.의 나.항 기재 돈 중 ① 2017. 8. 29.자 1억 원 및 ② 2017. 12. 26.자 1억 원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유한회사 C과 원고의 계약금이고, ③ 2018. 3. 13.자 2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의 선금금이다.

원고는 분양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③ 2018. 3. 13.자 2억 2,000만 원 중 2억 원(2억 2,000만 원에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또는 여기에 2020. 3. 26.자 합의에 따른 반환비율 86%를 적용한 1억 7,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① 2017. 8. 29.자 1억 원 및 ② 2017. 12. 26.자 1억 원은 원고의 대표이사 E가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투자한 돈이고, ③ 2018. 3. 13.자 2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유한회사 C과 원고의 계약금이다.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선금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구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70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와 유한회사 C의 계약금이 합계 2억 원(부가가치세를 별도)인데, 원고 및 그 대표이사가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피고 측에 합계 4억 2,000만 원(= 2017. 8. 29.자 1억 원 + 2017. 12. 26.자 1억 원 + 2018. 3. 13.자 2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4억 2,000만 원 중 계약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의 선급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으므로 위 돈이 선급금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돈의 성격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제1심에서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선급금이라고 주장을 다시 변경한바, 그 주장도 일관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2020. 3. 26. 합의해제 되었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7개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범위를 합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계약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돈이 중도금 및 잔금의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합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선택한다).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7개 회사에 5억 3,000만 원의 86%(4억 5,580만 원)을 반환하되, 기존에 확보된 루멘전기 태양광 공사대금 3억 324만 원을 제외한 1억 5,256만 원을 2020. 5. 15.까지 7개 회사를 대표한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 I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가 위 의무를 이미 이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에 대하여 합의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효진, 판사 김영아, 판사 김성흠

1)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지급을 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축소한 것에 불과하고 주위적 청구와 양립불가능하지도 않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